1.3.3. 안전관리비 집행(사용)계획 (분량 : 10p 내)

[별지 제5호 서식]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자 : 조삼선 안전총괄책임자 : 윤은미	
1. 개요			
공 사 명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상온전환 대수선공사(1단계)	공 사 기 간	2026.11.01. ~ 2027.04.30.
건설사 (대표자)	주식회사 벽사이앤씨 (윤은미)	총 공사금액	3,610,000,000원(VAT별도)
발주자 (대표자)	큐브인더스트리얼부동산일반 사모투자회사 (큐브 인더스트리얼자산운용㈜)	안전관리비	11,946,888원
공종 및 세부대상 공종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공종내용 (시행령 제98조 제1항)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의2.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실제 시공사 직원 엔지니어링 대가)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심사)비용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 검토(심사) 비용	5,300,000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및 (공사재개, 초기점검 대상 여부 확인) - 정밀안전점검은 제외(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책임부담)	2,646,888
3. 발파·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발파, 진동, 소음 주민피해 방지 대책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 지하수 차단 등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000,000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 비용	0
5. 안전모니터링 설치·운용 비용	2,000,000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0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1,000,000
총 계(부가가치세 별도)	11,946,888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하위법령을 근거로 안전관리비를 산출 계상하였으며, 세부 집행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비사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직접인건비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시공사 소속 공사담당 직원		4,106,883
	특급기술자 : 1 인 x 11일 x 373,353원 = 4,106,883원		
	②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143,117
소 계			4,250,000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300억미만	1회 x 회당 단가	1,050,000
	300억~500억		
	500억 초과		
	취약공종		
총 계			5,300,000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정기·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공 종		차수	금액
1) 정기안전점검 대가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1차	1,840,217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2차	
2) 1종 시설물 초기점검 대가	준공직전	1회	806,671
총 계			2,646,888

· 제1종시설물(건축물)에 대한 총 안전점검비 (정기점검 + 초기점검)
: **보간식 적용** {(0.16%-0.13%) / (50,000㎡-30,000㎡)} * 16,611.55㎡ = 0.025%
0.13% - 0.025% = 0.105% ∴ 2,520,845,655원*0.105% = 2,646,888원

· 정기안전점검비 ∴ 2,520,845,655원*0.073% = 1,840,217원

· 초기점검비 ∴ 2,520,845,655원*0.032% = 806,671원

※ 세부 산출근거 : 5p 참조

- 인건비 산출 근거자료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4,467	461,459	455,331	467,217	456,237	584,019	447,658
특급기술자	401,407	360,108	343,079	373,353	362,012	463,039	357,676
고급기술자	335,379	311,965	315,288	310,884	323,993	395,526	301,863
중급기술자	300,463	300,452	283,343	295,138	272,129	363,751	261,545
초급기술자	263,602	248,432	249,574	235,459	246,584	297,437	229,278
고급숙련기술자	309,271	301,459	273,034	281,075	267,856	360,090	289,195
중급숙련기술자	241,305	246,556	234,317	250,087	222,995	350,319	226,344
초급숙련기술자	217,582	209,640	198,751	218,142	192,381	226,251	194,317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산출 근거자료 (국토안전관리원 대가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안내

1 적용 개요

○ 관련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 제46조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

2 검토비용 기준([붙임1] 참조)

<table>
<tr><th>구 분</th><th>검토 비용</th></tr>
<tr><td>1. 총괄안전관리 계획서검토비</td><td>○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대상시설물별 세부)
○ 검토비용 기준
<table>
<tr><td>총 공사비*</td><td>300억 미만</td><td>300억~500억</td><td>500억 초과</td></tr>
<tr><td>검토 비용</td><td>1,050천원/건</td><td>1,250천원/건</td><td>1,550천원/건</td></tr>
</table>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td></tr>
<tr><td>2. 취약공종 안전관리 계획서검토비</td><td>○ 대상 :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에 취약공종**이 포함된 경우
○ 검토비용 기준 : 취약공종 건당 1,200천원 추가
** 취약공종의 대상
<table>
<tr><td>특수교량</td><td>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td></tr>
<tr><td>굴 착 공</td><td>굴착고 20m이상 ※원지반 기준 최대 굴착고</td></tr>
<tr><td>동바리공</td><td>슬라브두께 1m이상 or 동바리높이 10m이상(층고 10m이상 포함)</td></tr>
<tr><td>건 축 물</td><td>초고층(50층이상 or 높이200m이상),
특수구조(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PEB)</td></tr>
</table></td></tr>
<tr><td>3.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재 검토비 (공법변경)</td><td>○ 대상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현장여건 또는 계획의 공법변경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검토할 경우
○ 검토비용 기준
- 일반공종 : 건당 600천원
- 취약공종 : 건당 1,200천원</td></tr>
</table>

※ 각 항목별 검토비용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 안전점검비 산출 근거자료 (보간식 적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적용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건 축 물 ※금회 공사범위(1,3,4,8,9층) 연면적 : 66,611.55㎡ ※건축 순공사비 : 2,520,845,655원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66,611.55㎡	0.105	0.073	0.032

- 안전점검비 산출과정 제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 적용)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y = y_1 + \frac{(y_2 - y_1)}{(x_2 - x_1)}(x - x_1)$$

여기서, x : 해당 규격, x_1 : 작은 규격, x_2 : 큰 규격

y : 해당공사비요율, y_1 : 작은 규격 요율 y_2 : 큰 규격 요율

· 제1종시설물(건축물)에 대한 총 안전점검비 (정기점검 + 초기점검)
: **보간식 적용** {(0.16%-0.13%) / (50,000㎡-30,000㎡)} * 16,611.55㎡ = 0.025%
0.13% - 0.025% = 0.105% ∴ 2,520,845,655원*0.105% = 2,646,888원
· 정기안전점검비 ∴ 2,520,845,655원*0.073% = 1,840,217원
· 초기점검비 ∴ 2,520,845,655원*0.032% = 806,671원

소계 : 2,646,888원 (추후 실비정산)

<층별 면적 산출기준>

1층 13,343.91㎡ + 3,4,8,9층 각13,316.91㎡ = 66,611.55㎡

<건축공종 순공사비 산출기준 - 내역서>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대수선 공사

분 야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소 계
건축공사	847,918,681	1,426,342,252	246,584,722	2,520,845,655
건축공사	847,918,681	1,426,342,252	246,584,722	2,520,845,655